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1. 8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지방공무원으로 연차별 임용)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국가직 4명이 '96. 1. 1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방 12200 - 1994 ('95.12.30)호로 정원승인 되었으며

○ '95 조직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기술직(토목) 및 기능직을 군 및 읍면간 조정코자 함.

2. 제정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지방공무원으로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)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12200 - 1994 ('95.12.30)호로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승인

○ 내무 12200 - 12 ('96.1.5)호로 '95 조직개편 계획에 의함.

3. 주요골자

○ 군본청란에

◦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국가직 4명(행정6급1, 행정7급1, 행정8급1, 농업9급1)이 증원

◦ '95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술직(토목)3명, 기능직(전기,필기)3명이 증원되어

◦ 군본청은 정원상 총 10명이 증원되고 읍면은 6명이 감원되었음.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 본 청 : 239명
2. 의회사무과 : 18명
3. 직속 기관 : 114명
4. 사 업 소 : 27명
5. 읍.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1. 군 본 청 : 229명 2. 의회사무과 : 18명 3. 직속기관 : 114명 4. 사 업 소 : 27명 5. 읍.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	제2조 (정원의 총수) 1. 군 본 청 : 239명 2. 현행과 같음 3. 현행과 같음 4. 현행과 같음 5. 읍.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